
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2024년도 사업시행지침



경 기 도
(농업정책과)

목 차

I .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	3
II . 농어업 생산 · 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	19
III . 농식품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	38

1

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기도 농업정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 당 과	담 당 자	전화번호
경기도청	농업정책과	팀 장 김규섭 주무관 박수아	031-8008-4472 031-8008-4420
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	현장지원단	과 장 용호진	031-220-8784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-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, 농·축·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지원
-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

2. 사업근거

-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

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(융자)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농어업경영자금	24,000	24,000	38,732	36,393	41,314	39,600	37,800

II.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도내 주소지를 두고,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(원예, 특작, 과수, 수도작, 축산업, 수산업 등)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와 농업법인
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
 - 해당분야 예외적용 : 「농지법」에서 규정하는 농지에서 재배생산하는 표고버섯, 두릅, 약초류 포함

※ 지원제외 대상

- ▶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,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
- ▶ 농협, 산림조합·수협 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
- ▶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

▶ 법인(단체)으로 융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융자지원 불가

2. 지원조건

○ 재원 / 이율 :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(농업발전계정) / 연리 1%

○ 융자금용도 : 농·축·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

○ 융자액 : 농가 6천만원 이내, 농업법인 2억원 이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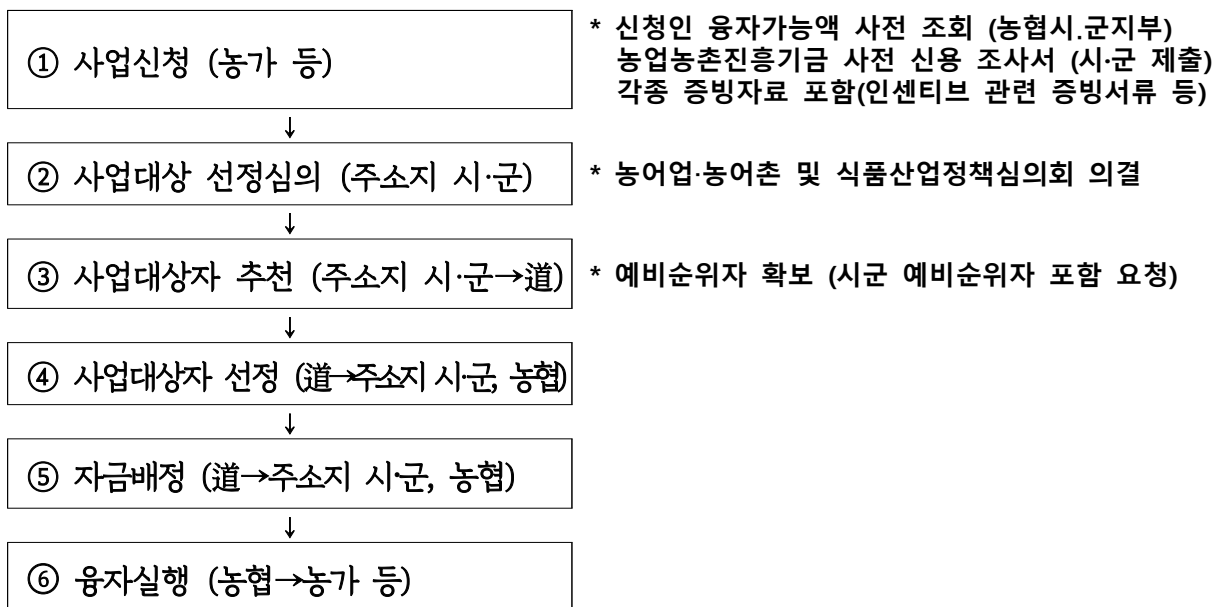
*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
○ 상환조건 :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일시상환

*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를 미리 은행(농협시.군지부)을 통해 확인 필요(신용·담보능력 확인)
- 별지서식 1-1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확인

Ⅲ. 세부추진 사항

1.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



* 사업신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(예정지)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제출 가능 * 각종 증빙자료 포함(인센티브 관련 증빙서류 등)

* 사업장 소재지(예정지) 관할 시·군에 접수된 해당 신청서는 사업 신청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접수 즉시 **주소지 관할 시·군으로 이송** 협조

<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>

2. 대상자 추천

가. 대상자 추천기준 (시·군)

- 융자지원대상자 평가기준(별첨2)에 따라 평가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천 * 예비순위자 포함하여 추천

- 기 융자금 수혜자는 신규신청 농가보다 후 순위 적용
- 농어업 생산·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불가
- * 농업인대상 수상자 인센티브 부여 (동점 시 우선선정)

나. 추천시 유의사항

- 시장·군수는 융자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의 기재사항(현재의 영농규모 등)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출장 또는 읍면동을 통해 반드시 확인
- 영농규모 평가 시 본인, 배우자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%, 서면 계약 한 임차농지는 50%를 영농기반으로 인정
- * 다만, 5년 이상 장기계약 한 임차농지는 70%까지 인정
- 융자금 신청자가 금융기관(농협)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 될 경우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원 불가함에 유의(사전 안내 및 동의 서명 확인, 서식1-1)
- * 대출 부적격, 담보 부족으로 사업포기 및 대출금액 축소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 (융자) 신청 전 융자가능 금액 확인 철저(사전 신용조사서 등 확인)
- 시장·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대출 받은 융자금을 회수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하여 융자금의 타용도 사용을 방지하고 사업이 꼭 필요한 농가가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
- * 시·군에서는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
- 시장·군수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자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 수시 확인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출신청을 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·선정 배제
- 시장·군수는 특정사업에 대한 제3자의 부적정 개입으로 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 과잉 생산 및 구조적 과잉 등의 문제 발생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검토 철저
- 지원대상자 사업내용 변경

-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. 단, 사업선정자의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·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에 변경 요청
- * 서식 1-2. 사업계획변경 신청(신고)서 확인
- * 당초 사업량 범위 내 변경 (당초 선정된 사업량을 초과하여 변경요청 불가)

○ 사업선정자 후순위자 결정

- 사업포기 또는 사업량 축소 등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후순위자 선정 필요 시 도에 변경승인 요청하고 후순위자 선정 ***도 변경 승인 확인 후 진행**
- 최초 선정한 후순위자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시·군 별 추가 사업자 선정은 道 승인 후 진행하고,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」 심의 절차준수

3. 자금배정 단계

가. 자금배정

- 자금배정은 시장·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, 道에서 선정 후 배정하며, 시·군은 은행(농협)에서 대상자에게 융자를 실행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배정이 어려울 경우 대상자에게 포기를 확정하고 후순위자나 타 시·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 *** 배정자금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**
- * 시·군 배정은 '23년 지원, 불용액, '24년 시·군 요청액 등 종합적 검토하여 배정

나. 융자실행

- 시장·군수는 도에서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수령토록 통보
 - “대상자선정확인서(서식2)” 발급, “지원대상자명단(서식4)” 농협 통보
 - 선정순위와 관계없이 자금을 먼저 필요로 하는 농·어업인부터 지원
- 융자취급기관장은 지원대상자명단과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를 확인하고 융자 실행
- 시장·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융자금 수령 통보서를 받았음에도, 15일 이내 융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자(예비순위자 포함)에게 융자 조치
 - * 공문에 명시된 기간 내(15일 이내)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 (민원인에게 해당내용 통보)
- 법인 대출금은 사업계획서와 자금 활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표자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

4. 이행점검 단계

- 시장·군수는 농업경영자금 “지원대상자 명단(서식4)”과 “선정확인서 발급대장(서식3)”을 작성 비치
- 융자취급기관장은 월별 융자실적을 시장·군수에게 통보(서식8)
- 도·시·군·융자취급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정 지원 사전 차단
 - 시장·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 **도에 보고**
 *융자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현황 정보를 확인하여 미실행 융자금 불용 최소화 조치
 - 시장·군수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, 그 **결과를 도에 보고**
 *회수사유 : 농업인 자격상실, 사업포기, 융자금 타 용도로 사용, 타 시·도 전출 등
- ※ (경기도) 지원제한 대상 취합하여 전체 시·군 제공(매분기)
- 시장·군수는 상환완료시까지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용·관리 여부를 **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, 관리카드·엑셀 등에 기록 관리**(아래 예시 참조)

지원대상자			융자액 (천원)	대출 실행일	대출 만기일	점검내역				
주소	성명 (대표자)	생년월일 (법인번호)				점검 일자	점검자	상환실태	현장 운영실태	회수사유 발생유무

- ※ 경영자금은 사업완료(소모성 자재, 사료구입 등)가 확인된 경우 현장 운영실태 점검은 생략할 수 있으며, 상환실태는 지속 관리
-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융자금 회수 등 행정조치
 (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1조)
- 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금을 반납한 자는 향후 5년간 지원 배제

<별첨1>

'24년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계획(안)

(단위 : 천원)

시 · 군	'23년 배정	'24년 배정(안)	비고
합 계	39,600,000	37,800,000	
수 원 시	60,000	60,000	
용 인 시	700,000	700,000	
고 양 시	1,200,000	1,200,000	
성 남 시	60,000	60,000	
화 성 시	4,800,000	4,800,000	
부 천 시	120,000	120,000	
남 양 주	300,000	300,000	
안 산 시	440,000	440,000	
평 택 시	3,100,000	3,100,000	
안 양 시	60,000	60,000	
시 흥 시	120,000	120,000	
김 포 시	900,000	900,000	
파 주 시	2,000,000	2,000,000	
의 정 부	0	0	
광 주 시	300,000	300,000	
광 명 시	120,000	120,000	
하 남 시	200,000	200,000	
군 포 시	60,000	60,000	
오 산 시	60,000	60,000	
양 주 시	500,000	500,000	
이 천 시	4,800,000	4,800,000	
구 리 시	60,000	60,000	
안 성 시	1,000,000	1,000,000	
의 왕 시	400,000	400,000	
포 천 시	2,900,000	2,900,000	
양 평 군	2,000,000	2,000,000	
여 주 시	500,000	500,000	
동 두 천	120,000	120,000	
과 천 시	120,000	120,000	
가 평 군	800,000	800,000	
연 천 군	2,500,000	2,500,000	
배정유보	9,300,000	7,500,000	

※ (주의) 시군별 배정액은 사업신청을 위한 추산금액으로 신청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- 시·군별 배정액은 확정금액이 아니므로 위 금액에 맞추어 농가별 신청금액 조정 불필요

<별첨2>

융자지원대상자 평가기준

1. 일반농업 분야

구 분	배 점 기 준		배 점	평가 점수
계	100			
영농경력 (10점)	영농경력 2년 단위로 1점		10	
영농규모 (20점)	①일반농업	②시설농업(채소,화훼,특작류등)		
	4.0ha 이상	유리온실4,000평 및 비닐온실8,000평이상	20	
	3.0ha~4.0ha미만	유리온실3,000평 및 비닐온실6,000평이상	17~19	
	2.0ha~3.0ha미만	유리온실2,000평 및 비닐온실4,000평이상	14~16	
	1.0ha~2.0ha미만	유리온실1,000평 및 비닐온실2,000평이상	11~13	
	1.0ha미만	유리온실1,000평 및 비닐온실2,000평미만	10	
수출실적 (10점)	연간 5억이상		10	
	연간 3억이상 수출농가		8	
	연간 1억이상 수출농가		6	
	연간 1억미만 수출농가		4	
	수출실적은 없으나 향후 수출계획이 있는 농가		2	
고 품 질 생산농가 (25점)	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생산출하 농가		25	
	친환경 인증(유기)		20	
	친환경 인증(무농약)		15	
	규격포장 출하농가		10	
	실적이 없으나 향후 위 4개 항목을 이행할 계획이 있는 농가		5	
경영장부 기록여부 (10점)	일별, 주별, 전산프로그램기장, 일별복식부기		10	
	주별 복식부기		8	
	일별 간이기록장, 월별 전산프로그램 기장		6	
	월별 간이기록장등		4	
	미 기록		0	
기술개발 (10점)	신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		5	합산
	새로운 농기구 등 적정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		5	
수상경력 (10점)	농어업관련 도지사 표창 이상 수상자(단체)		10	
	농어업관련 시장·군수 표창 이상 수상자(단체)		8	
	공인된 농어업관련단체, 농협조합장 표창 수상자(단체)		6	
	일반 농가(미 수상자)		0	
자격증 (5점)	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실적(1개월 이상)		5	

2. 축산분야

구 분	배 점 기 준	배 점	평가 점수
계	100		
축산경력 (10점)	가축사육 경력 1년 단위로 2점 영농후계자 가점 5점 ※ 가점포함 최대 10점을 넘을 순 없음	10	
사육규모 (15점)	한우 200두 이상, 젓소 100두 이상, 돼지 2,000두 이상, 닭 3만수 이상	15	
	한우 100두 이상, 젓소 50두 이상, 돼지 1,000두 이상, 닭 2만수 이상	13	
	한우 50두 이상, 젓소 30두 이상, 돼지 500두 이상, 닭 1만수 이상	11	
	한우 50두 미만, 젓소 30두 미만, 돼지 500두 미만, 닭 1만수 미만	9	
	※ 기타가축은 축종에 따라 중·소가축 기준에 준함		
축산업 허가(등록) (10점)	친환경 축산 직불제 참여농가	10	
	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	8	
	미허가(등록) 농가이나 향후 축산업 허가(등록) 추진중인 농가	6	
고 품 질 축 산 물 생산농가 (20점)	농장 HACCP 및 경기도지사 G마크 인증농가(단체), 경기도 가축 행복 인증농가	20	
	브랜드 축산물 생산농가(단체)	15	
	일반 사육농가	10	
자급사료 이용 (10점)	한우, 젓소 사육농가 중 자급사료 사용 비중이 30% 이상	10	
	한우, 젓소 사육농가 중 자급사료 사용 비중이 20% 이상	8	
	한우, 젓소 사육농가 중 자급사료 사용 비중이 10% 이상	6	
	한우, 젓소 사육농가 중 자급사료 사용 비중이 10% 미만	4	
	※ 돼지, 가금, 기타가축은 5점 적용		
생산주체 (10점)	농·축산업협동조합(업종 축협포함)	10	
	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	8	
	축산 협업체, 단지 등	7	
	개별농가	5	
기술개발 (10점)	신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축산 농가(단체)	5	합산
	새로운 기구를 개발한 실적이 있는 축산 농가(단체)	5	
수상경력 (10점)	축산관련으로 도지사표창 이상 수상자(단체)	10	
	축산관련으로 시장, 군수표창 이상 수상자(단체)	8	
	공인된 축산관련 단체, 축협조합장 수상자(단체)	6	
	일반 농가(미 수상자)	0	
자격증 (5점)	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실적(1개월 이상)	5	

3. 수산분야

구 분	배 점 기 준				배점	평가 점수
계					100	
영어경력 (20점)	신청사업 경력을 1년 단위로 1점씩 가산				20	
영어규모 (10점)	어선어업	해면양식어업 (축제식포함)	육상양식(해면)	내수면양식		
	10톤이상	3ha이상	350평이상	550평이상	10	
	5~10톤	2.5~3.0ha	250~350평	450~550평	8	
	2~5톤	2~2.5ha	200~250평	400~450평	6	
	1~2톤	1.5~2.0ha	150~200평	300~400평	4	
	1톤미만	1.5ha미만	150평미만	300평미만	2	
교육훈련 (20점)	정부·자치단체·교육기관·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선도어업 경영체에서 교육을 받은 1일당 1점씩 가산				20	
경영장부 기록여부 (15점)	일별·주별·전산프로그램기장·일별복식부기				15	
	주별복식부기				13	
	일별간이기록장·월별전산프로그램기장				11	
	월별간이기록장 등				9	
	미기록				0	
수출실적 (10점)	연간 1천만원 이상 수출어가				10	
	연간 1천만원 이하 수출어가				8	
	수출실적이 없으나 향후 수출계획이 있는 어가				6	
기술개발 (10점)	신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				5	합산
	새로운 어구나 기구를 개발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				5	
수상경력 (10점)	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어업인으로 불법어업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적이 없는 어업인				10	
	시장·군수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어업인으로 불법어업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적이 없는 어업인				5	
자격증 (5점)	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실적(1개월 이상)				5	

<서식 1>

농업농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(농어업경영자금)

(접수번호 :)

1. 신 청 자

성명 (단체명)		생년월일		성별	
주 소		전화번호	자택: 휴대폰:		

2. 신청내용

신청금액	금	원 (₩)	자금사용시기	월(상, 하)
영농작목		영농규모		
자금용도 (요약)				

※ 영농조합 등에서 50백만원 이상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별도 첨부

3. 당해연도 경영계획

①조수입 (예상)	②경 영 비			③자가노력비	④연소득 ①-(②+③)
	자재구입비	인건비	계		
천원					

본인은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“농어업경영자금 지원”사업을 신청하며,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 (조합)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☐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☐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

2024년 월 일

대표자(신청자) (인)

(영농조합 등 단체에서 신청 시 조합원 연명날인 첨부)

() 시장·군수 귀하

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

1.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

(2024년 월 일 기준)

주 소						전화번호			
생산자단체등· 회사·기타명칭			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			대표자 (성명)			
신청사업명									
소요사업비	총액	천원	보 조		대 출		자담		

2. 종합거래 신용상태

현재 연체사실			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	
유	무	연체금액 (조사기준일현재)	유	무

3. 대출가능액(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)

담보종류	수량	대출가능액	담보물소재지	소유자(관계)
		천원		

※ 대출가능액(담보여력)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“자료” 에 의함
(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)

4.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(조사기준일현재) : 천원

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(확인) 신청인 성명 : (서명)

2024년 월 일

() 시군지부장 (인)

<서식 1-2>

사업계획변경 신청(신고)서

1. 주 소 :

2. 성 명 :

3. 생년월일 :

4. 사업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	사업비(지원액)		변 경 사 유	비 고
당 초	변 경	당 초	변 경		

* 농업농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첨부(별지 제1호 서식)

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)

2024년 월 일

신청자 (인)

() 시장·군수 귀하

<서식 2>

(시군보관용)

(발급번호 : 호)

농어업경영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서

대상자 주소					
대상자 성명		생년월일		성별	
융자결정금액	금 원 (₩)				
용 도					
비 고					

2024년 월 일

() 시장·군수 (인)

.....절.....취.....선.....

(금융기관 제출용)

농어업경영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서

대상자 주소					
대상자 성명		생년월일		성별	
융자결정금액	금 원(₩)				
용 도					
비 고					

2024년 월 일

() 시장·군수 (인)

() 농협장 귀하

※ 이 확인서와 융자 신청서류를 융자취급기관(해당농협)에 제출하십시오.

<서식3>

농어업경영자금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 발급대장

[illegible]

※ 반드시 시·군에 비치

<서식 4>

'24년 농어업경영자금 지원대상자 추천 명단

(단위 : 천원)

순위	분야	대상농가/ 농업법인			영농규모		사전 검토액	신청액	확정액	자금소요 시 기
		주 소	성 명 (대표자명)	생년월일 (법인번호)	면적(ha)	작목/품 목/업종				
1										
2										
3										
4										
5										
6										
7										
8										
9										
10										
11										
12										
13										
:										
:										
예비										
1										
예비										
2										
예비										
예비										
예비										

※ 분야는 일반농업, 축산, 수산 등 작성하고 예비순위자 작성 (별첨 엑셀자료 참조)

<서식 5>

'24년 농어업경영자금 대상자 추천결과 보고

(단위 : 천원)

[illegible]

<서식 6>

'24년 농어업경영자금 배정요구서(월 1회)

(시·군) 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배정	집행액	금회신청	배정누계	배정잔액
계						
일반농업						
축 산						
수 산						

※ 긴급자금이 필요시 신청 기간에 관계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배정요구

<서식 7>

'24년 농어업경영자금 지원실적 보고(12월말 기준)

(시·군) (단위 : 천원)

구 분	배 정 실 적		집 행 실 적			집행잔액	미집행사유
	농가수	배정액	농가수	집행액	비율		
계							
일반농업							
축 산							
수 산							

<서식 8> (응자취급기관 → 시·군)

'24년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실행 실적

(시·군)

(단위 : 천원)

[illegible]

<서식 9> (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→ 道)

'24년 농어업경영자금 대출 실적

(단위 : 천원)

[illegible]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기도 농업정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 당 과	담 당 자	전화번호
경기도청	농업정책과	팀 장 김규섭 주무관 박수아	031-8008-4472 031-8008-4420
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	현장지원단	과 장 용호진	031-220-8784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-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, 도내 농어업인에게 생산·유통·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지원
-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 영농 기반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

2. 사업근거

-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

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(용자)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	8,000	13,000	14,657	8,220	6,545	9,500	6,500

II.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(원예, 특작, 과수, 수도작, 축산업, 수산업 등)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(농업법인은 지원 불가)
- 해당분야 예외적용 : 임업(표고재배, 임산물가공, 조경수 생산, 분재, 종균목 구입 등)

* 이 지침에서 임업은 농지에서 재배하는 임산물의 영농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함

-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
-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을 이수한 귀농 예정자 (경기도 귀농 예정자만 해당)
- '23년 시설자금 선정자 중 '24년 내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(단, 예산범위 내 시행)

※ 지원제외 대상

- ▶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,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
- ▶ 농협, 산림조합·수협 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
- ▶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

2. 지원조건

- 재원 / 이율 :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(농업발전계정) / 연리 1%
- 융자금용도 : 영농기반 조성 (*비료, 유류,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)
- 융자액 : 농가 1억원 이내 *농업법인은 지원 불가
 - *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상환조건 :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(*연체시 대출기관 일반연체율 적용)
 - 청년 농업인(만18세이상~40세미만)에 한해 상환조건 완화 :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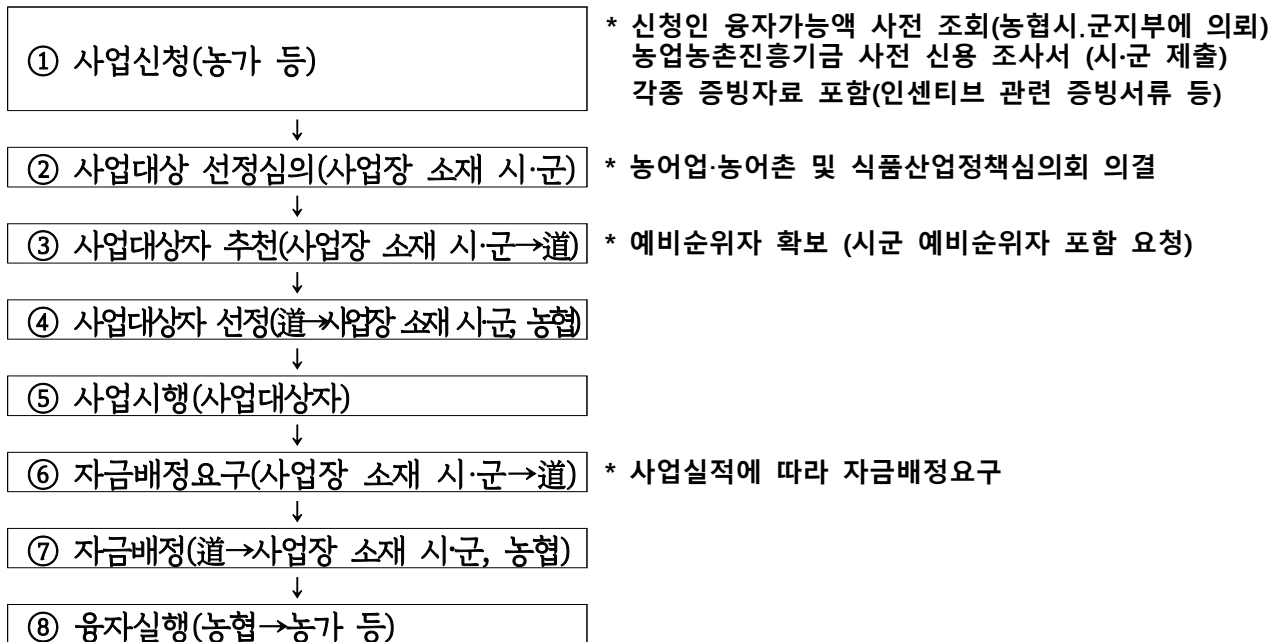
- *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를 미리 은행(농협시.군지부)을 통해 확인 필요(신용·담보능력 확인)
 - 별지서식 1-1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확인
- * 종묘구입, 가축입식 등은 농신보에서는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으로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 철저

3. 대상사업

- 농업 : 농지구입,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, 시설물설치, 묘목·화훼·종묘 구입 등
- 축산 : 축사 신·개축, 초지 및 사료포 조성, 가축 입식(모돈구입 등) 등
- 수산 : 어선구입·건조 및 개·보수, 시설물 설치 등
- 임업 : 표고재배, 임산물 가공, 조경수 생산, 분재, 종균목 구입 등

Ⅲ. 세부추진 사항

1.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



- * 사업신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(예정지)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제출 가능 * 각종 증빙자료 포함(인센티브 관련 증빙서류 등)
- * 주소지 관할 시·군에 접수된 해당 신청서에 대하여 사업신청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접수 즉시 [사업장 소재지\(예정지\) 관할 시·군으로 이송](#) 협조

<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>

2. 대상자 추천

가. 대상자 추천기준(시군)

- 용자금 신청자는 신청 전 금융기관(농협)으로부터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**용자가능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** *예비순위자 포함하여 추천
- 기 용자 수혜자는 신규신청 농가보다 후 순위 적용
-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

나. 추천 시 유의사항

- 시장·군수는 용자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의 기재사항(현재의 영농규모)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**현지출장 또는 읍면동을 통해 반드시 확인**
- * 특히, 하우스 설치 및 가축입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영농규모(가축 수, 시설면적 규모 등)를 확인 기록하여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시 대조 확인

- 영농규모 평가 시 본인, 배우자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%, 서면 계약한 임차농지는 50%를 영농기반으로 인정
 - * 다만, 5년 이상 장기계약 한 임차농지는 70%까지 인정
- 융자금 신청자가 금융기관(농협)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원 불가함에 유의(사전 안내 및 동의 서명 확인, 서식1-1)
 - * 사업완료 후 대출 부적격, 담보 부족으로 사업포기 및 대출금액 축소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(융자) 신청 전 융자가능 금액 확인 철저(사전 신용조사서 등 확인)
 - * 농신보(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)에서는 종묘구입, 가축입식 등은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으로 사전에 안내 철저(담보필요)
- 시장·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관계법령(농지매매 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)의 위반 등 불법사항, 지원목적 외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대출 받은 융자금을 회수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하여 융자금의 타용도 사용을 방지하고 사업이 꼭 필요한 농가가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
 - * 시·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안내 부적정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
- 시장·군수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자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 수시 확인
 - *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출신청을 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 시 후순위로 배치
- 예외: '23년 시설자금 사업선정자 중 아래에 해당될 경우 지원(경영자금 해당없음)

2023년도 시설자금 선정자 중 ' 23년 대출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, ' 24년 수요조사 시 기성고가 70% 이상으로 올해 완공이 가능한 자는 시·군 추천을 거쳐 지원

- * 예산범위 내 지원 (예산 부족 시 지원 불가)
- * 허위보고 시 패널티 부여 (' 24년도 사업 신청 시 후 순위 배치)

- 시장·군수는 특정사업에 대한 제3자의 부적정 개입으로 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 과잉 생산 및 구조적 과잉 등의 문제 발생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검토 철저
- 지원대상자 사업내용 변경
 -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. 단, 사업선정자의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·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에 변경 요청
 - * 서식 1-2. 사업계획변경 신청(신고)서 확인

* 당초 사업량 범위 내 변경 (당초 선정된 사업량을 초과하여 변경요청 불가)

○ 사업선정자 후순위자 결정

- 사업포기 또는 사업량 축소 등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후순위자 선정 필요 시도에 변경승인 요청하고 후순위자 선정 *도 변경 승인 확인 후 진행
- 최초 선정한 후순위자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시·군 별 추가 사업자 선정은 道 승인 후 진행하고,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」 심의 절차준수

3. 자금배정 단계

가. 자금배정

- 시·군 :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사업실적확인서<서식3> 및 증빙자료를 道 및 읍·면사무소에 제출
- 자금배정은 매월 1일, 15일에 배정할 계획으로, 읍·면사무소가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여 배정된 자금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
- ※ 자금배정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다음 배정일에 배정

- 道 : 사업실적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에 따라 사업실적 확인 후 읍·면사무소 배정

나. 읍·면사무소

- 시장·군수는 도에서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읍·면사무소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·면사무소를 수령토록 통보
- 농협 : 시·군 사업실적확인서와 道 읍·면사무소 배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읍·면사무소

4. 이행점검 단계

- 도-시·군-읍·면사무소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정 지원 사전 차단
- 시장·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 道에 보고
- *읍·면사무소로부터 대출현황 정보를 확인하여 미실행 읍·면사무소 불용 최소화 조치
- 시장·군수는 읍·면사무소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읍·면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 읍·면사무소를 회수하도록 조치하고, 그 결과를 道에 보고
- *회수사유 : 농업인 자격상실, 사업포기, 읍·면사무소 타 용도로 사용, 타 시·도 전출 등
- ※ (경기도) 지원제한 대상 취합하여 전체 시·군 제공(매분기)
- 시장·군수는 사업추진과정을 전·중·후로 나누어 사진기록 등 관리카드를 작성하고, 상환완료시까지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용·관리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현장 점검 및 관리카드 등에 기록 관리(서식 8)

-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융자금 회수 등 행정조치
(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1조)
- 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금을 반납한 자는 향후 5년간 지원 배제
- 융자취급기관장은 월별 융자실적을 시장·군수에게 통보<서식7>
- 사업 추진 시 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규에 의한 인·허가, 신고, 협의, 동의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 조치

「별첨 1」

’24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금 지원계획(안)

(단위 : 천원)

시 · 군	’23년 배정	’24년 배정(안)	비고
합 계	9,500,000	6,500,000	
수 원 시	0	0	
용 인 시	200,000	200,000	
고 양 시	400,000	400,000	
성 남 시	0	0	
화 성 시	700,000	700,000	
부 천 시	0	0	
남 양 주	100,000	100,000	
안 산 시	100,000	100,000	
평택 시	200,000	200,000	
안 양 시	0	0	
시 흥 시	0	0	
김 포 시	200,000	200,000	
파 주 시	400,000	400,000	
의 정 부	0	0	
광 주 시	100,000	100,000	
광 명 시	0	0	
하 남 시	0	0	
군 포 시	0	0	
오 산 시	0	0	
양 주 시	200,000	200,000	
이 천 시	400,000	400,000	
구 리 시	0	0	
안 성 시	100,000	100,000	
의 왕 시	0	0	
포 천 시	200,000	200,000	
양 평 군	400,000	400,000	
여 주 시	200,000	200,000	
동 두 천	0	0	
과 천 시	0	0	
가 평 군	300,000	300,000	
연 천 군	300,000	300,000	
배정유보	5,000,000	2,000,000	

※ (주의) 시·군별 배정액은 사업신청을 위한 추산금액으로 신청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 - 시·군별 배정액은 확정금액이 아니므로 위 금액에 맞추어 농가별 신청금액 조정 불필요

「별첨 2」

평가방법 및 배점

구 분	배 점	점 수	비 고
영농정착의욕 및 지역사회기여도 (15점)	영농정착의욕	3~5	상(5점) 중(4점) 하(3점) 각 점수 합산
	사업계획의 타당성	3~5	
	지역사회기여도	3~5	
자경영농규모 (20점)	2.0ha이상	20	
	1.5ha이상 ~ 2.0ha미만	19~17	
	1.0ha이상 ~ 1.5ha미만	16~14	
	0.5ha이상 ~ 1.0ha미만	13~11	
	0.5ha미만	10	
영농경력 (10점)	영농경력 2년 단위로 1점	1~10	
농수산물학력 (10점)	농수산물계대학졸업자	10	
	농수산물계전문대학졸업자, 최고농업경영자과정	8	
	일반대학 및 농수산물계고등학교졸업자	6	
	기타학교졸업자	4	
학습단체활동 (10점) ○ 영농후계자 ○ 농어촌지도자 ○ 작목반참여	2종참여	10	
	1종참여	5	
	미참여	0	
수상경력 (10점)	도지사 이상 표창 수상자(단체)	10	
	시장·군수 이상 표창 수상자(단체)	8	
	공인된 농어업관련단체 수상자, 농협조합장(단체)	6	
	수상경력 없음	0	
기술개발 (10점)	신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	5	합산
	새로운 농기구를 개발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	5	
고품질 생산농가 (10점)	G마크 생산 출하 농가	10	
	친환경 인증, 품질인증(HACCP 등) 농가	8	
	규격포장 출하 농가	5	
	일반 농가	3	
자격증(5점)	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실적(1개월 이상)	5	

영농규모 평가기준(자영규모)

구분 품목	0.5ha미만에 준하는 농가	0.5~1.0ha미 만에 준하는 농가	1.0~1.5ha미 만에 준하는 농가	1.5~2.0ha미 만에 준하는 농가	2.0ha이상에 준하는 농가
	ha미만	ha미만	ha미만	ha미만	ha이상
식량작물	0.70	0.70~1.40	1.40~2.10	2.10~2.80	2.80
노지채소	0.33	0.33~0.65	0.65~0.98	0.98~1.31	1.31
시설엽근채	0.12	0.12~0.24	0.24~0.36	0.36~0.48	0.48
시설과채	0.08	0.08~0.16	0.16~0.24	0.24~0.32	0.32
노지과수	0.23	0.23~0.45	0.45~0.68	0.68~0.91	0.91
시설과수	0.08	0.08~0.16	0.16~0.25	0.25~0.33	0.33
화 훼	0.05	0.05~0.09	0.09~0.14	0.14~0.19	0.19
약용작물	0.14	0.14~0.27	0.27~0.41	0.41~0.54	0.54
특용작물	0.72	0.72~1.43	1.43~2.15	2.15~2.87	2.87
느타리버섯	0.03	0.03~0.06	0.06~0.09	0.09~0.12	0.12
	두(수)미만	두(수)미만	두(수)미만	두(수)미만	두(수)미만
한우(번식)	18	18 ~ 36	36 ~ 54	54 ~ 72	72
한 육 우	10	10~20	20~31	31 ~ 41	41
낙 농	2	2~5	5~7	7 ~ 10	10
양돈(비육)	36	36~73	73~109	109 ~ 145	145
양돈(번식)	8	8~15	15~23	23 ~ 31	31
양계(산란)	756	756~1,512	1,512~2,268	1,512~2,268	2,268
양계(육계)	2,459	2,459~4,918	4,918~7,378	7,378~9,837	9,837

※ 세부적인 사항은 농축산물 표준소득(농진청)자료 참고

※ 이 표에 없는 품목은 상기 표준소득(농업소득)을 감안하여 배점

※ 2개 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%, 그 외의 기반은 50% 인정

「별첨 3」

용자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

공통서류	주민등록증(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), 도장(담보대출일 경우에는 인감도장, 그 외에는 사용도장)			
담보대출	제출서류	수량	발급처	비고
	○ 등기부등본(대지, 건물) ○ 도시계획확인원(지적도) 또는 국토이용확인원 ○ 토지, 건축물대장등본 ○ 인감증명서 ○ 임대차계약서(사본) ○ 등기관리증(사본)	각 1통 1통 각1통 1통 입주인전원	등기소 구청(군청) 구청, 읍, 면사무소 읍면동사무소 본인보관본 본인보관본	아파트및집단주택제외
농신보 대출	○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○ 등기부등본 ○ 건강보험증(사본) (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) ○ 농지원부(자경농) ○ 임대차계약서(임대차농) ○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○ 세목별과세증명서	각1통	구청, 읍, 면사무소 FAX민원 (1577-1000) 구청, 읍, 면사무소 세무서 구청, 읍, 면사무소	

※ 용자신청 전 신청예정인 NH농협은행 시군지부 정책대부계 담당자와 유선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【참고사항】

- 위 제출서류 중 일부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
-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 시·군 지부에 문의

<서식 1>

농업농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(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)

1. 영농규모

구 분	영 농 규 모											주작목 현황	
	농 지 규 모 (ha)						축 산 (두)				어선 어업 (톤)	주 작목 및 지역 특산물명	규모
	계	전	답	초지	과수	양식장	젖소	한우 비육우	양돈	기타			
면적및 규모													

2. 경 력

영농경력	최종학력	영농후계자 지정년도	농어촌 지도자 가입년도	청년창업농 지정년도	작 목 반 활동사항	자격증 및 기타경력	
						내용	기 간
년 월 일 ~ 년 월 일 (년 개월)	학교명 졸업년도	년	년	년	작목반명: 가입년도		

3. 사업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세부사업내용	사 업 비		
			계	융자금	자부담
계		※ 분기별계획 첨부			

* 시·군에서는 분기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도포기자 발생 사전 방지

4. 기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수혜여부

(단위 : 천원)

수혜년도	사업명	융자금액	상환액	미상환액	비고

본인은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“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”사업을 신청하며,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(조합)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☐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☐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신청인 주 소 :

전화번호 :

생년월일 :

성별 :

성 명 :

인

○○시장·군수 귀하

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

1.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

(년 월 일 기준)

주 소						전화번호			
생산자단체등· 회사·기타명칭				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				대표자 (성명)	
신청사업명									
소요사업비		총액	천원	보 조		대 출		자담	

2. 종합거래 신용상태

현재 연체사실			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	
유	무	연체금액 (조사기준일현재)	유	무

3. 대출가능액(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)

담보종류	수량	대출가능액	담보물소재지	소유자(관계)
		천원		

※ 대출가능액(담보여력)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“자료” 에 의함
(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)

4.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(조사기준일현재) : 천원

유의사항
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(확인) 신청인 성명 : (서명)

2024년 월 일

() 시군지부장 (인)

<서식 1-2>

사업계획변경 신청(신고)서

1. 주 소 :

2. 성 명 :

3. 생년월일 :

4. 사업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	사업비(지원액)		변 경 사 유	비 고
당 초	변 경	당 초	변 경		

* 농업농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첨부(별지 제1호 서식)

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)

2024년 월 일

신청자 (인)

() 시장·군수 귀하

<서식 2>

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추천서

성명	생년월일	주 소	사업 작목	영농 규모	평가 총점	순위	비 고
※ 종합의견 :							

※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에 의거 평가 후 순위결정(후순위자 포함할 것)

2024년 월 일

○○ 시장·군수 직인

사업실적(추진계획) 확인 통보서

1. 사 업 명 :

2. 사 업 자

○성 명 :

○생 년 월 일 :

○주 소 :

3. 사업계획 (행정기관 승인분)

○사 업 량 :

○사 업 내 용 :

○사업장 소재지 :

○사 업 비 :

(단위 : 원)

총 투자계획 (가 =나+다)	응 자 (나)	자 부 담 (다)	비 고

4. 사업실적

(단위 : 원)

총투자계획 (가)	사 업 추 진 실 적			
	대금지급분 (라)	대금미지급분 (마)	계 (바=라+마)	비율 (바 / 가)

주 : 대금미지급분은 외상구입(설치)등으로 사업에 투자된 금액

위와 같이 확인 통보 합니다.

2024. . .

확인자 ○○ 시장·군수

직인

NH농협은행 ○○ 시·군지부장 귀하

경기도지사 귀하

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신청농가 명단

(○○시·군)

(단위 : 천원)

[illegible]

※ 반드시 엑셀로 작성 (별첨 엑셀자료 참조)

<서식 5>

'24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배정요구서

(시·군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배정	집행액	금회신청	배정누계	배정잔액
계						
일반농업						
축 산						
수 산						

<서식 6>

'24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실적 보고(12월말 기준)

(시·군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배 정 실 적		집 행 실 적			집행잔액	미집행사유
	농가수	배정액	농가수	집행액	비율		
계							
일반농업							
축 산							
수 산							

<서식 7> (응자취급기관 → 시·군)

'24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실행 실적

(시·군)

(단위 : 천원)

[illegible]

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관리카드

☐ 인적사항

성명(단체명)		생년월일	
주소		전화번호	
사업장 소재지			

☐ 융자금 지원(대출) 현황

지원 구분	융자지원 정보			사업량	대출 실행일	상환 만기일
	확정액	지급액	상환방법			
시설자금						

☐ 사업계획 및 실적

계획, 실적,착공,완공일자 등 관리가 필요한 정보 기재 *사업추진과정(전·중·후) 사진 포함
--

☐ 사업추진 점검내역

점검일자	점검자	점 검 결 과
00.00.00. ()	○○○	○ 상환 중, 상환완료, 연체중 등 기재 ○ 공사(식재)중, 현상유지, 사업부진, 폐업 등 현장점검 세부내용 기재
		사진 부착 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

☐ 기타 특이사항

관리가 필요한 부가 정보 등 기재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기도 농업정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 당 과	담 당 자	전화번호
경기도청	농업정책과	팀 장 김규섭 주무관 박수아	031-8008-4472 031-8008-4420
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	현장지원단	과 장 용호진	031-220-8784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- 도내 농림수산물경영체(이하 “농식품경영체”라 한다)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식품경영체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
- 도내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농식품경영체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

2. 사업근거

-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
-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

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4년
농식품경영체(융자)	3,000	3,000	1,000	700	500	700	700

II.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도내 농식품 경영체로 도에서 정한 일정한 지원조건(지원조건 참조)에 해당 되는 법인
 - “농식품경영체”란 「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규정하며, 법인화된 업체로 정함
- *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,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

「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농림수산물경영체의 범위) 농림수산물경영체(이하 “농식품경영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2. 18.>

1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
2.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「수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물사업자
3. 농림수산식품의 소재(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) 또는 그 생산설비(소재를 제조·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)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(「상법」상 주식회사, 유한회사, 합자회사, 합명회사를 말한다)
- 가.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- 나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
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물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

2. 지원조건

가. 공통사항

○ 시설자금 운용금액

- 융자한도액 : 최대 5억원 이내
- 융자조건 : 연리 1%,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
- *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완료에 따라 융자 실행
- *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
○ 경영자금 운용금액

- 융자한도액 : 최대 2억원 이내
- 융자조건 : 연리 1%, 2년 만기상환
- *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
나. 세부 지원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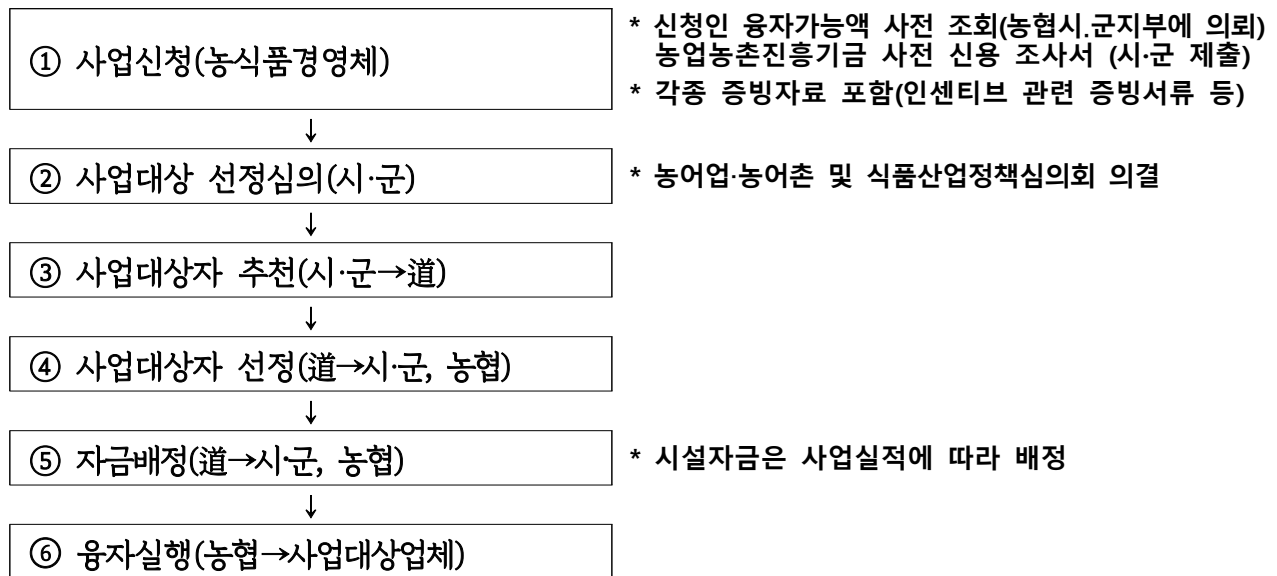
-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·수산물을 원료로 물리적·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변화를 가하여 생산·가공·제조·조리하는 농식품산업
- 위 식품산업으로 생산된 산물을 포장·보관·수송 또는 판매하는 농식품산업
- ※ “식품산업”의 정의는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8호에서 규정함

3. 자금의 사용용도

- 시설자금 : 농·수산물을 원료로 생산·가공·제조·조리·포장·보관·수송 또는 판매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, 부지매입비(시설설치용도)
- 경영자금 : 원료 농산물 구입 등 운영자금

Ⅲ. 세부추진 사항

1.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



2. 대상자 추천

가. 대상자 추천기준(시군)

- 용자지원대상자 자체 평가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천
(예비순위자도 명기)
-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법인
(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)
- 기 용자 수혜자는 신규신청 농가보다 후 순위 적용
- 시장·군수는 용자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의 기재사항(업체규모 등)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현지출장 확인
- 시장·군수는 용자를 받은 자가 관계법령(농지매매 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)의 위반 등 불법사항, 지원목적 외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대출 받은 용자금을 즉시 회수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하여 용자금의 타용도 사용을 방지

- 융자금 신청자가 금융기관(농협)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원 불가함에 유의(사전 안내 및 동의 서명 확인, 서식 3)
 - *사업완료 후 대출 부적격, 담보 부족으로 사업포기 및 대출금액 축소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(융자) 신청 전 융자가능 금액 확인 철저(사전 신용조사서 등 확인)
- 반드시 「시·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」심의 후 추천
- 대상자 추천 우선순위
 - 유망중소기업·벤처기업·수출유망중소기업·녹색인증기업
 - 기업·농업상생기업 또는 공유경제 실천 기업
 - 경기 농산물을 원료로 생산·가공·제조·조리 등을 하는 기업(비율이 높을수록 선순위)
 - 경기 농산물(또는 부산물 등)을 이용하여 신기술·신상품을 개발하는 기업
 - G마크 인증 품목 이용, 지역특화 품목 및 지역 농특산물 이용 업체
- 단순히 원료를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는 등 단순가공 업체, 전년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업체는 선정 배제
- 지원대상자 사업내용 변경
 -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. 단, 사업선정자의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·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에 변경 요청
 - * 서식 1-2. 사업계획변경 신청(신고)서 확인
 - * 당초 사업량 범위 내 변경 (당초 선정된 사업량을 초과하여 변경요청 불가)
- 사업선정자 후순위자 결정
 - 사업포기 또는 사업량 축소 등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후순위자 선정 필요 시 도에 변경승인 요청하고 후순위자 선정 *도 변경 승인 확인 후 진행
 - 최초 선정한 후순위자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시·군 별 추가 사업자 선정은 道 승인 후 진행하고,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」 심의 절차준수

4. 자금배정 단계

가. 자금배정

- 시·군
 - 경영자금은 대상자 선정과 함께 일괄 자금 배정
 - 시설자금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사업실적확인서(서식 4) 및 증빙자료를 道 및 융자기관에 제출

- 시설 자금배정은 매월 1일, 15일에 배정할 계획으로, 용자실행이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여 배정된 자금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

* 자금배정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다음 배정일에 배정

- 道 : 사업실적확인서 발급결과에 따라 용자금 배정

나. 용자실행

- 시장·군수는 도에서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용자대상자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용자금을 수령토록 통보
- 농협 : 시·군 사업실적확인서와 道 용자금 배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용자 실행

5. 이행점검 단계

- 도·시·군-용자취급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정 지원 사전 차단
 - 시장·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 道에 보고
 - *용자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현황 정보를 확인하여 미실행 용자금 불용 최소화 조치
 - 시장·군수는 용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용자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용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, 그 결과를 道에 보고
 - *회수사유 : 농업인 자격상실, 사업포기, 용자금 타 용도로 사용, 타 시·도 전출 등
- ※ (경기도) 지원제한 대상 취합하여 전체 시·군 제공(매분기)
- 시장·군수는 사업추진과정을 전·중·후로 나누어 사진기록 등 관리카드를 작성하고, 상환완료시까지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용·관리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현장 점검 및 관리카드 등에 기록 관리(서식 6)
 - 경영자금은 사업완료(소모성 자재, 사료구입 등)가 확인된 경우 현장 운영실태 점검은 생략할 수 있으며, 상환실태는 지속 관리
 -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용자금 회수 조치 등 행정조치
 - 용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금을 반납한 자는 향후 5년간 지원 배제
- 용자취급기관장은 월별 용자실적을 시장·군수에게 통보(서식5)
- 사업 추진 시 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규에 의한 인·허가, 신고, 협의, 동의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 조치

<서식 1>

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(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)

		신청액		백만원									
일반현황	업체명				대표자				홈페이지				
	주 소							E-mail					
	연락처	전화 :			Fax :			휴대폰 :					
	주 생산품	품 목		계									
		생산량(톤)											
경영형태	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주식회사, 생산자단체, 기타							설립년도					
황	시설 규모 (㎡)	부지	건물	오피수 (톤)	주요설비	시설투자 (백만원)	계	보조	융자	자 담 (실투자비)			
운영실태	가동 실적	연간생산 능력(톤)	연 간 가동일수	연 간 생산량(톤)	총매출액 (백만원)	국내매출액 (백만원)	수출액 (백만원)	수출국					
	원료 조달	계	자가생산	개별농가	산지조합	산지수집상	도매시장	기타					
		100 %	%	%	%	%	%	% %					
	농산물 사용량 (연간)	톤	원산지		경기도(%), 타 지역(%),								
			경기도 인증		G마크(%), 지역명품(%), 타지역 및 비인증(%)								
	판매 방법	계	직 거 래			소 매 상				도 매 상			
			방문객	직판점	통신	백화점	농수	식당	기타	종합	특정	기타	
			관광객	전시 판매장	판매	할인점	축협			도매업체	도매업체		
		100%	%	%	%	%	%	%	%	%	%	%	
비용 (백만원)	계	원료구입비		인건비		연구개발비		판매·홍보		기타			
고용현황		상용직		명		일용직		명					
우선순위 대상(√)		① 유망·벤처·수출유망중소기업 ② 기업·농업상생기업 또는 공유경제실천기업 ③ 경기농산물 원료사용(%), ④ 신기술,신상품 개발 기업 ⑤ 기타()											

본인은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“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”사업을 신청하며,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- ☐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☐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신청업체 주 소 :
대 표 자 :

인

시장·군수 귀하

<서식 1-1>

사업계획서

[illegible]

위와 같이 농업농촌진흥기금 용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24년 양일

신청업체 주 소 :

대표자 : 인

시장·군수 귀하

<서식 1-2>

사업계획변경 신청(신고)서

1. 주 소 :

2. 성 명 :

3. 생년월일 :

4. 사업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	사업비(지원액)		변 경 사 유	비 고
당 초	변 경	당 초	변 경		

* 농업농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첨부(별지 제1호 서식)

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)

2024년 월 일

신청자 (인)

() 시장·군수 귀하

<서식 2>

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업체 추천서

업체명	대표자	주 소	업종	주생산품	순위	비 고
※ 종합의견 :						

2024년 월 일

〇〇 시장·군수 직인

사업실적(추진계획) 확인 통보서

1. 사 업 명 :

2. 사 업 자

○성 명 :

○생 년 월 일 :

○주 소 :

3. 사업계획 (행정기관 승인분)

○사 업 량 :

○사 업 내 용 :

○사업장 소재지 :

○사 업 비 :

(단위 : 원)

총 투자계획 (가 =나+다)	응 자 (나)	자 부 담 (다)	비 고

4. 사업실적

(단위 : 원)

총투자계획 (가)	사 업 추 진 실 적			
	대금지급분 (라)	대금미지급분 (마)	계 (바=라+마)	비율 (바 / 가)

주 : 대금 미 지급분은 외상구입(설치)등으로 사업에 투자된 금액

위와 같이 확인 통보 합니다.

2024. . .

확인자 ○○ 시장·군수

직인

NH농협은행 ○○ 시·군지부장 귀하

경기도지사 귀하

<서식 5> (응자취급기관 → 시·군)

'24년 농식품경영체 융자실행 실적

(시·군)

(단위 : 천원)

[illegible]

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 관리카드

☐ 인적사항

성명(단체명)		생년월일	
주소		전화번호	
사업장 소재지			

☐ 융자금 지원(대출) 현황

지원 구분	융자지원 정보			사업량	대출 실행일	상환 만기일
	확정액	지급액	상환방법			
시설/경영자금						

☐ 사업계획 및 실적

계획, 실적, 착공, 완공일자 등 관리가 필요한 정보 기재 *사업추진과정(전·중·후) 사진 포함
--

☐ 사업추진 점검내역

점검일자	점검자	점 검 결 과
00.00.00. ()	○○○	○ 상환 중, 상환완료, 연체중 등 기재 ○ 공사(식재)중, 현상유지, 사업부진, 폐업 등 현장점검 세부내용 기재
		사진 부착 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

☐ 기타 특이사항

관리가 필요한 부가 정보 등 기재
